

##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직제 규정

2011.12.14. 제정

2014.12.16. 개정

2017.01.03. 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 (이하 “본 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본 회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### 제3조(정원 및 기구)

- ① 본 회의 정원 및 기구는 별표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.
- ② 부서별 정원은 정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정한다.
- ③ 회장은 본 회의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직제 외에 임시 기구를 둘 수 있다. 다만, 임시기구의 정원은 별도정원으로 할 수 있다.

**제4조(직급 및 직위)** 본 회 직원의 직급은 별표 1과 같으며, 직위는 회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5조(겸직)** 회장은 필요에 따라 겸직을 명할 수 있다.

### 제6조(보임)

- ① 부서장이라 함은 팀장급 이상을 말한다.
- ② 사무차장은 1급 또는 2급으로 보한다.
- ③ 본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. <개정 2017.01.03.>
- ④ 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.

**제7조(부서장의 책임)** 부서장은 상사를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, 소관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.

**제8조(권한의 위임)**

- ① 회장은 본 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서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9조(직무대행)** 부서장이 유고시에는 직제순에 따라 차하위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직무 대행자를 따로 지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10조(기타사용인)** 회장은 본 회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제 외에 전문위원 또는 보조원 등의 기타 사용인을 둘 수 있다.

**제11조(분장업무)** 각 부서의 부서별 업무분장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2조(보칙)**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.

**부 칙 (2011.12.14.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정원 및 기구에 대한 특례)** 제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 및 기구는 정원의 총수 내에서 예산에 따라 적절히 운영할 수 있다.

**부 칙 (2014.12.16.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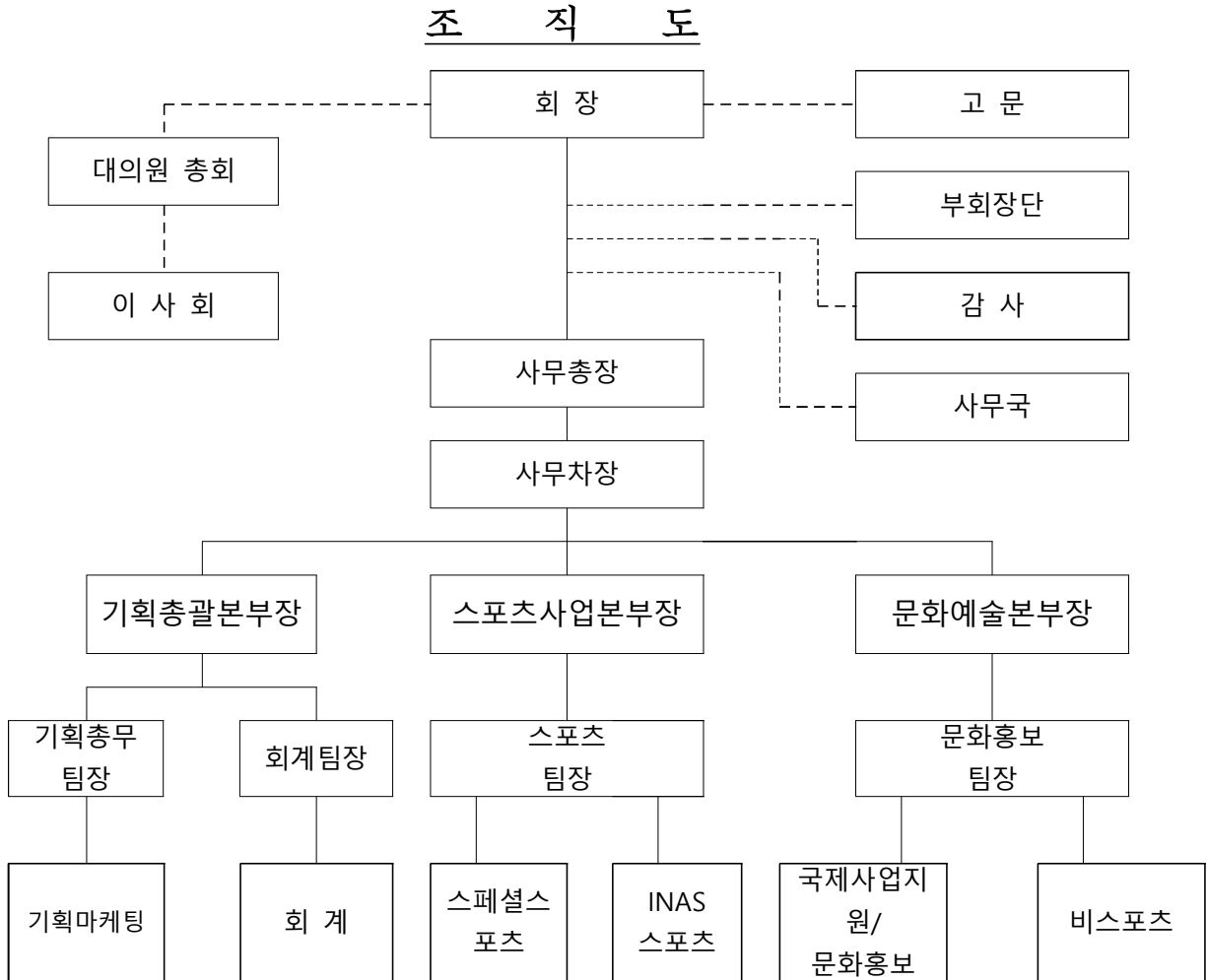
**부 칙 (2017.01.03.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<개정 2014.12.16.> 1차 2부의 직제를 1차 3부로 개편

<개정 2017.01.03.> ‘부장’을 ‘본부장’으로 변경



[별표 2]

**정 원 표**

직위	임원 관리직	일반직						총인원
	사무총장	1급	2급	3급	4급	5급	6/7급	
인원	1명	1명	3명	3명	4명	4명	4명	20명